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은



정부·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 (R&D)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R&D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 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 및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를 대기업(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선정  
하여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기술개발과 판로가 동시에 보장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공공기관)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매칭형 ‘수요연계 R&D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육성
- R&D를 매개로 투자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연구개발 관계를 조성

\* 투자기업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공공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 ● 지원분야

수요조사  
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미래전략  
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컨소시움 방식)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업무협력 및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일반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제품화과정 : 금형·목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디자인, 시험생산, 신뢰성 검사 및 인증 등 양산용 시제품까지 개발



# 사업 지원내용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Win-Win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 ● 참여대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R&D 자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공공기관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중소기업 제외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 이상인 기업





## ● 지원내용

### 수요조사 과제

투자기업에서 제안한 신제품, 국산화 개발과제에 대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미래전략 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컨소시움 방식)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업무협력 및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자금 지원

- ※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신청시 자금을 출연한 투자기업으로부터 추천서 발급
- ※ 기술개발 성공시 투자기업에서 제품 구매이행(최소 3년, 정부출연금 5배 이상)

## ■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sup>1)</sup>	모집방식	비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이내	지정공모	-
미래전략과제	최대 3년	10억원 이내	지정공모	컨소시움 <sup>2)</sup> 지원
기업제안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자유응모	-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 2) 미래전략 1개 과제당 2개 이상~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1개 중소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 지원하되 지원금은 정부-투자기업간 1:1의 비율로 지원)

## ■ 사업비 부담비율

- 정부(37.5%), 투자기업(37.5%), 중소기업(25%)
- ※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 현금 부담
-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 기술료로 회수

# 대기업(공공기관) 참여는?

## ● 정부와 공동으로 R&D 자금을 조성합니다.

-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약을 통하여 R&D과제에 투자할 자금을 사전에 매칭하여 조성

▷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의 매칭비율은 50% : 50% 로 구성

▷ 설정기간 : 3~5년이내

## ●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합니다.

- 개발이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온·오프라인 병행 제출)

▷ 투자기업 과제제안서(RFP) 제출

○ 온 라 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온라인 수요조사 → 민·관 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

○ 오프라인 : 참여의사 및 과제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제출 ('업무협력 및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포함)

## ● 공동기술개발자금을 납입합니다.

▷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선정된 후 조성된 자금내에서 투자기업 부담금을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납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에 따라 '11년 ~ '13년까지 투자기업 부담금의 7%를 해당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공공기관 대상) 및 동반성장지수 산정(민간 대기업 대상)을 위한 평가에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 실적 반영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납입한 투자기업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

# 중소기업 참여는?



## ● 온라인 공고된 기술개발 과제목록을 검토 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 온라인상으로 해당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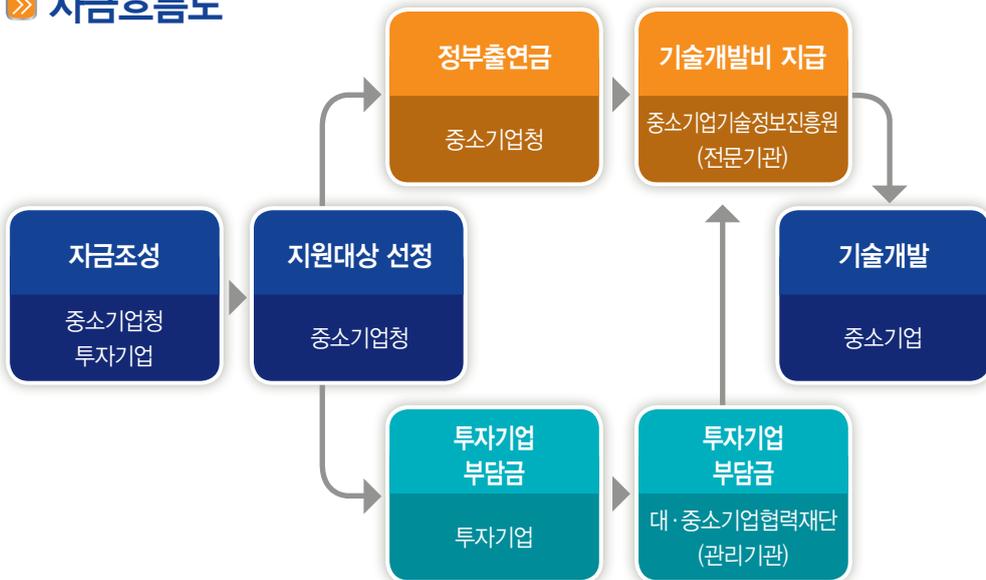
### ▷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 온라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 해당과제의 투자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제출
- ※ 기업제안과제 : 해당과제 제안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제출



선정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10억원(기업제안과제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 개발 성공시에는 투자기업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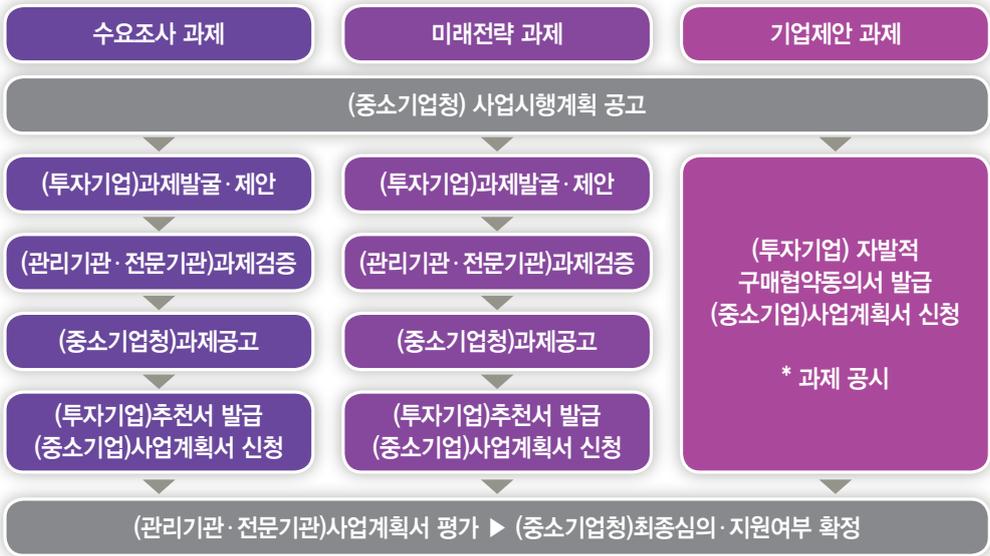
## » 자금흐름도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행절차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총괄</li> <li>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li> </ul>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기술개발 자금 조성 및 협약식 개최</li> <li>중소기업 과제접수, 검토, 현장평가, 진도점검, 최종점검</li> <li>투자기업 출연 R&amp;D 자금 관리</li> <li>성과보상제도 운영</li> </ul>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조사 과제 검증</li> <li>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 구성·운영</li> <li>협약체결·변경, 최종평가, 사업비 관리 및 지급</li> <li>기술료 징수·관리, 사후관리</li> </ul>
투자기업 (대기업·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성 및 협약식</li> <li>수요과제 발굴 및 RFP 제출</li> <li>기술개발과제 평가 참여 및 점검</li> <li>구매이행</li> </ul>
주관기관(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상용화 개발 등</li> </ul>

# 기대 효과는?



## R&D 중심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R&D 지원모델 정착

# 성과보상제도 및 기부금 납부

## ● 성과보상제도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서부터 구매성공에 이르기까지 기여한 대기업·중소기업 등 과제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

## ● 성과보상제도 자원 조성

- **납부대상**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 완료 후 성공판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기부금 납부** : 납부 기술료의 5%범위에서 산정

※ 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료 통보 후 30일 이내 전액 현금 납부

예시) 납부대상 기술료가 2,000만원인 경우, 성과보상 기부금은 100만원(기술료 5%)이며,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기술료는 1,900만원만 납부

## ▪ 기부금 납부절차



## 성과보상 기부금 납부혜택

- 중소기업이 기부금 납부시 해당금액만큼 **기술료가 감면**됩니다.
- 기부금 처리를 통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관련법 : 법인세법 24조의 1

-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포상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포상제도 운영

- 대상 : 사업참여 우수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 선정기준 :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 세부포상내역 : 상장, 현금 및 상품권, 해외연수 지원 등  
 ※ 상격 : 지식경제부장관상, 중기청장상 등

개인		단체	
포상명	대상	포상명	대상
기술협력 대상	과제기여자 (대기업)	기술협력 우수 수요처	대기업
기술협력 우수상		기술개발 우수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협력 장려상		과제발굴상	수요처
공로상	유관기관		

※ 포상기준별 포상내역은 연도별 포상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2011년 제1회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을 통해 21개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수상하였습니다.



# 과제 발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연구회

## ● 기술연구회란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투자기업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연구회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구회별 운영비\* 1천만원 한도 지원  
※ 운영비 : 회의비, 세미나비, 전문가 수당, 인쇄비, 여비 등
- **지원방법** : 투자기업의 과제발굴방식, 내부방침 등에 따라 연구회 운영 방식 선택 (A, B형 中 택1)

### A형) 투자기업과 운영기관 공동운영

- 투자기업이 운영기관\*(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공동 운영

※운영기관 : 기술연구회 운영 또는 과제발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성을 보유하고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B형) 투자기업 자체운영

- 투자기업의 직접운영 방식(기술보안 등의 내부방침 고려)
- 투자기업 요청시 산·학·연 전문가를 협력 중소기업에 연계·지원

##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02-368-8717)



# 개발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 기술자료 임치제도



##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
-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 대기업은 사용기술에 대해 안전하게 백업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중소기업에게 그대로 귀속)

## ● 임치 대상물

### 기술상 정보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 설계도  
물질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경영상 정보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고객 데이터  
매뉴얼 등

## ● 미출원 기술에 대한 안전한 보호

- 특허를 출원한 기술뿐만 아니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안전한 보호 가능

##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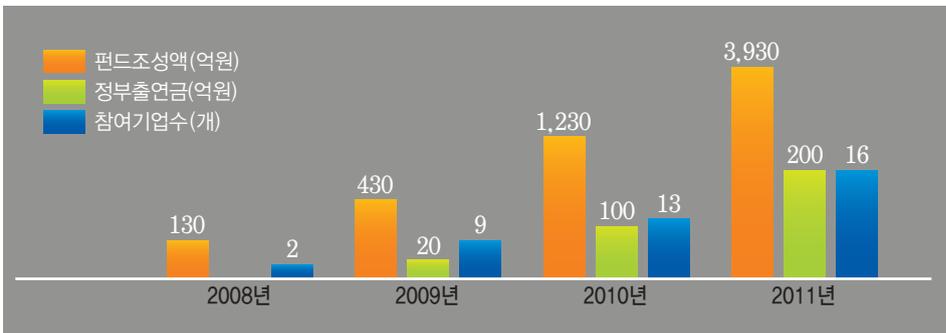
# 현재까지 사업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펀드 조성현황

- 조성금액 : 430억원('09년)→1,230억원('10년)→3,930억원('11년)→4,030억원('12년 3월 현재)



## 펀드 조성기업

대기업

LS엠트론

POSCO

Inkel

SAMSUNG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AMSUNG

삼성SDI

SAMSUNG

삼성전기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현대중공업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Incheon Airport

한국가스공사

※ 2012년 3월 기준, 17개 기관이 참여중입니다.





## ● 언론보도



미래전략 동반성장 R&D 선포식



협력펀드 결성식(삼성S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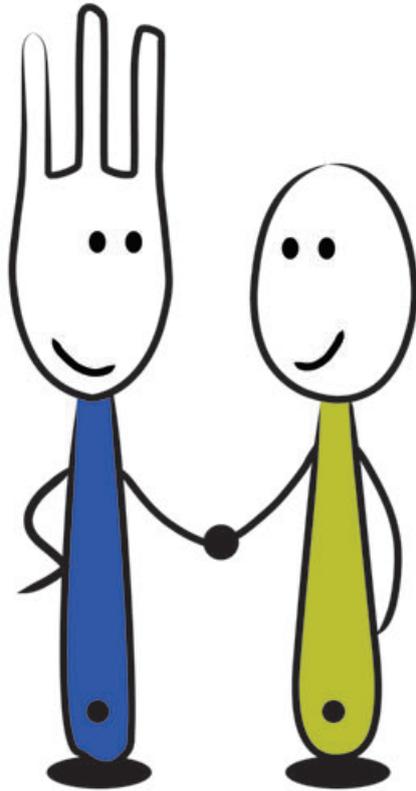
협력펀드 결성식(포스코)



협력펀드 결성식(삼성SDI)

사업 안내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 ☎ (02)368-8713~871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www.tipa.or.kr](http://www.tipa.or.kr)) ☎ (02)3787-0542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넘어 동반자로!



동반성장 무엇이 성공하게 할까요?

무한경쟁 시대에 신규이익을 창출하려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자금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간 전략적 협력은 최고의 Win-Win 전략입니다

협력을 넘어 동반자로서의 동반성장! 무한경쟁 시대의 성공 비결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중소기업은 국번없이 ☎1357



150-87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3길 3 키옥스벤처센터 8층  
Tel. 02-368-8713~8719 Fax. 368-8799  
[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